

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					지정번호 연도-번호	
성 명		생년월일				
주 소	(전화번호 :)					
자동차종류		형 식				
차의 등록번호		정 원		제작연도		
보험(공제) 가입회사		배상한도	대인	대물		
차의 운행구간						
차의 운행횟수						
<p>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경찰서장)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인</div>						

유의사항

1.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신고증명서를 지녀야 합니다.
2. 이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.
3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신고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.